

개정 전	개정 후
<u>< 신설 ></u> <u>213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</u>	<u>214. 「원자력안전법」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·처리·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건설·운영허가</u>
<u>〈제5종〉</u> <u>< 신설 ></u> <u>49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</u>	<u>21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</u> <u>〈제5종〉</u> <u>49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</u>
	<u>50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</u>